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안이유

가. 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되어 도서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도서주민의 정주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여건에 제약을 덜 받는 2,000톤급 이상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해 5도 항로에 총 톤수 2,000톤급 이상, 속력 35노트 이상의 전천후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취항 후 3년간 운영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며, 용진군에 지원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재정자금을 용진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가 매년 운영 실적을 정산한 증명서류와 함께 용진군수에게 신청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용진군수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의거 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되어 도서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도서주민의 정주 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 항로"란 인천항~백령(소청, 대청 경유), 인천항~연평(소연평 경유) 항로를 말한다.
2. "전천후 대형여객선"이란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속력 35노트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서해 5도 항로에 전천후 대형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손실"이란 서해 5도 항로에 여객선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비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여객선 취항 후 운영손실이 발생한 여객선사로 하며, 운영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지원기간은 여객선 취항일로부터 최대 3년간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웅진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지원금은 여객선 운영실적을 정산하여 제3조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자금을 웅진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매년 정산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웅진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증명서류는 공인회계법인이 작성하여 공증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④ 웅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체결) 웅진군수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조사) ① 시장 및 웅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과 관련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시정 요구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3조제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